

제주영어교육도시 아이비스 127 입주자모집공고문



※ 본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제주영어교육도시 아이비스 127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jeuivies127.co.kr/>)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방문은 아이비스 127 홈페이지(<http://www.jeuivies127.co.kr/>) 방문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 예약하신 분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 접수일정 및 방문가능기간(사전방문,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체결(예비입주자 포함) 등)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자격확인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하며,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방문 시 분양완료 이후에는 계약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1인만 입장 가능 / 대리인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2.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최근 14일 이내 해외입국자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 측정 결과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방역력 작성 및 신분 확인에 불응할 경우

※ 사업주체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관람이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상담전화, 공식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공공·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 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TEL. 1661-0360)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1.11.1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9.(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공동주택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1.2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2020.11.29.이전)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호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우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우주택세대구성원”이란,세대원전원이주택을소유하고있지않은세대의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1순위, 12개월 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이상인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소득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본 공급주택은 간단한 청약의 문답을 위한 정부의 방편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행위 및 취급행위를 비롯하여 인터넷 가입 및 공동인증서 신청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우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취소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 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juvies127.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한 및 전매금지, 가점제 재당첨제한, 예비당첨자 선정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시(30 일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공동주택의 견본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87번지에 설치되며, 홈페이지(<http://www.jejuvies127.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도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 정	12월 09일(목)	12월 10일(금)	12월 20일(월)	12월 31일(금) ~ 1월 5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87번지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73867호(2021.11.26.)로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수리 96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상 1층, 지상 3층(4층 다락방) 21개동 총 127세대 중 일반공급 1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12월 예정(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함)
- 시행수탁자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시공사 : ㈜유탑건설
- 미확보 부지에 대한 매도청구 진행사항 : 해당사항 없음(전체 부지확보 완료)
- 구분 지상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차대수 : 270대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 여부 : 본 건축물의 대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있지 않음.
- 대지면적 : 29,833㎡
- 건축물 연면적 : 14,743.0674㎡

■ 공급대상

(단위 :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2021000894	01	098.9514C	C type	098.9514	7.4486	106.4000	7.5867	113.9867	231.3100	27	27	
		02	098.9514G	C type	098.9514	7.4486	106.4000	7.5867	113.9867	231.3100	19	19	
		03	098.9514H	C type	098.9514	7.4486	106.4000	7.5867	113.9867	231.3100	13	13	
		04	099.0914A	A type	099.0914	7.4686	106.5600	7.5975	114.1575	231.6373	5	5	
		05	099.1340B	B type	099.1340	8.0782	107.2122	7.6006	114.8128	231.7369	3	3	
		06	099.5746D	D type	099.5746	8.3054	107.8800	7.6344	115.5144	232.7668	30	30	
		07	099.0914E	A type	099.0914	7.4686	106.5600	7.5975	114.1575	231.6373	16	16	
		08	099.1340F	B type	099.1340	8.0782	107.2122	7.6006	114.8128	231.7369	14	14	
	합 계									127	127		

098.9514C	501동	7	122,571,169	607,428,831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099.5746D	502동	3	123,343,127	606,656,873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099.0914A	503동	5	122,744,605	607,255,395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099.1340B	504동	3	122,797,383	607,202,617	730,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73,000,000	219,000,000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비율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상호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주택형표시안내

주 택 타 입	A type		B type		C type			D type
주택형(㎡)	99.0914A	99.0914E	99.1340B	99.1340F	98.9514C	98.9514G	98.9514H	99.5746D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타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유의사항

- 분양가격 항목의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 전(세대 키 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배치별 등으로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본 주택의 분양조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계약금이 미납될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발생하며 계약해제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며, 이에 대해 감면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비수도권 읍면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의 ‘국민주택’형으로 부가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청약 신청자중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일반공급	1순위	2021.12.09(목) 09:00~ 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1.12.10(금) 09:00~ 17:30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 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p>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가 1년 미만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2.20.(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1.12 .31 .(금) ~ 2022.01.05 .(수) (10:00~16:00) • 장소-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97번지)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본주택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지정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2.20.(월) ~ 2021.12.29.(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12.20(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유지됨.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세대 발생 및 소명 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 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미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 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정당계약일에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정	계약 장소
정당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21.12.22 (수) ~ 21.12.29 (수) 10:00 ~ 16:00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87번지
정당당첨자 계약체결	21.12.31 (금) ~ 22.01.05 (수) 10:00 ~ 16:00	

<유의사항>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 대상자 자격확인 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예비당첨자 일정은 정당계약 이후 개별통지 예정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자격검증서류 일체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공동주택계약용]으로 직접 기재(본인발급용),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 [공동주택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	위임장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방문예약 후 접수)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방문예약 후 접수)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정당당첨자인 경우에도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세대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상기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최초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계좌	KB국민은행	349401- 04- 309843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가능, 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1차, 계약금2차,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901호 홍길동 →0901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분양대금 납부일(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금2차,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현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수탁자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입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공동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 간 동일한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부활 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본 공동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확인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의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할 경우, 사업주체에서 판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명단에서 제외 요청할 예정이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이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 ① 청약가점항목(우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20.2.21.부터 개정 · 시행되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공동주택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본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함을 인지하여야 함.(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 1항 제1호 및 제 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방법	계약서 작성 시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또는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정부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
인터넷	기획재정부 정부수입인지 홈페이지(www.e-revenuestamp.or.kr)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

-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 15만원**)을 납입하신 후 정부 수입인지를 계약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하셔야 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2021.01.0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무(과소)납부 세액의 200%), 6개월 초과(무(과소)납부 세액의 300%)** 가산세가 발생하오니 이점 반드시 참고하시어 정부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동 법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을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대출 안내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으로 시행위탁자가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공급금액의 **60%**에 대해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나, 관련정책등에 따라 대출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이 불가능한 중도금은 계약자가 자납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예정이나, 관련 정부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총 분양대금의 10% 상당의 금액인 계약금을 완납한 후에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정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한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 개정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음)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법적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대출승계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계약자 또는 분양권 양수인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에 계약을 하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할시청 및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에 따른 신고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납부 및 대출 알선 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또는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 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 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과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대출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약정을 별도로 체결 하여야 합니다.(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대출 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금액을 본인의 책임으로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함)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건에 한하여 중도금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합니다.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금융기관 확정 후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입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부적격 사유 등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일부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 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인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주차장은 개별 호실 필로티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입구의 높이는 2.3M 이상의 높이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3년 12월 예정** (다만,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지정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합니다. 또한, (주)유탕건설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유탕건설을 대신하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연장되며, 수분양자는 이에 동의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 공동주택 관리법 」 제36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발코니확장

- 본 주택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을 하며, 기본형으로 시공하지 않습니다.(분양가 포함)

■ 시스템 에어컨

주택타입	거실	안방	방1	방2
A type	1	1	1	1
B type	1	1	1	1
C type	1	1	1	1
D type	1	1	1	1

- 본 주택은 방 마다 천정형 에어컨이 무상으로 설치됩니다.
- 다락방에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션 납부계좌	KB국민은행	349401-04-313013	케이비신탁 주식회사

■ 유상옵션 품목(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추가 선택품목)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방특화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타입	품목	적용부위	제품명	금액 (부가세 포함)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계약시	중도금 대출신청시	입주시	
A type	주방상판+주방벽	주방	엔지니어드스톤	1,100,000	220,000	330,000	550,000	
B type				1,120,000	224,000	336,000	560,000	
C type				1,110,000	222,000	333,000	555,000	

D type				1,460,000	292,000	438,000	730,000	
--------	--	--	--	-----------	---------	---------	---------	--

-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주방상판은 기본형 인조대리석(MMA), 주방벽은 기본형 도기질타일(300X600)이 시공됩니다.

2. 주방가구 특화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타입	품목	적용부위	제품명	금액 (부가세 포함)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계약시	중도금 대출신청시	입주시	
A type	주방보조 상·하부 수납장	주방	상부장(브론즈 유리)+ 중간뒷판(브론즈 경)+ 하부장(상판포함)	2,390,000	478,000	717,000,	1,195,000	
B type				2,280,000	456,000	684,000	1,140,000	
C type				1,760,000	352,000	528,000	880,000	
D type				1,160,000	232,000	348,000	580,0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별도의 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3. 거실 특화 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타입	품목	적용부위	제품명	금액 (부가세 포함)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계약시	중도금 대출신청시	입주시	
A type	거실 간접조명	거실 우물천정	T5, LED	480,000	96,000	144,000	240,000	
B type				410,000	82,000	123,000	205,000	
C type				480,000	96,000	144,000	240,000	
D type				410,000	82,000	123,000	205,000	
A type	거실 아트월	거실 벽면	유럽산 세라믹 박판타일 (1,200X2,400)	940,000	188,000	282,000	470,000	
B type				870,000	174,000	261,000	435,000	
C type				1,180,000	236,000	354,000	590,000	
D type				1,060,000	212,000	318,000	530,000	

- 거실 간접조명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간접조명 없는 기본형 우물천정(단천정)으로 시공됩니다.

- 거실 아트월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형 포세린타일(600 x 1,200)이 시공됩니다.

4. 바닥 마감재 특화옵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타입	품목	적용부위	제품명	금액 (부가세 포함)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계약시	중도금 대출신청시	입주시	
A type	고급형 타입	2층 거실 / 주방	포세린타일(600X600)	590,000	118,000	177,000	295,000	
B type				520,000	104,000	156,000	260,000	
C type				600,000	120,000	180,000	300,000	
D type				500,000	100,000	150,000	250,000	

-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기본형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5. (빌트인) 가전 설치

(단위 : 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제품명	금액 (부가세 포함)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부가세 포함)			비고
					계약금(20%)	중도금(30%)	잔금(50%)	
					계약시	중도금 대출신청시	입주시	
전평형	비스포크 냉장고 (냉장+냉동/ 김치)	삼성전자	RF60A91R1AP+RQ33A74C2 AP	5,140,000	1,028,000	1,542,000	2,570,000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DW60T8075FG	1,110,000	222,000	333,000	555,000	
	현관 에어샤워	그렉스	AS-150	540,000	108,000	162,000	270,000	

■ 추가 선택 품목 공통 유의사항

-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계약은 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계약 후 자재발주 및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계약 및 변경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 손해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된 모델은 제품의 단종, 품질, 품귀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건본주택은 변경 승인된 인허가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였으므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전체 택지지구의 택지준공과 연동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기간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독점으로 인한 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내부에 한합니다.
- 건본주택에 건립되는 세대를 제외한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모형과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 면적, 마감재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 등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허가변경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 내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은 인허가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유상)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타입별 기본 제공품목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워크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본 공사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홍통,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드레인, 선홍통, 위생기구, 욕실악세사리, 수전류, 전열교환기, 가스보일러, 시스템에어컨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천장의 물딩, 세면대 선반 규격, 현관디딤판, 타일 나누기 등 본 공사시 사용성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부 여건**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고 계약한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에 사용된 평면도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각 면적별 분양되는 단위세대의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은 세대 간 벽체를 공유하며, 이로 인해 층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경우 약식표기 상 같은 단위세대 주택형일지라도, 다락 및 테라스의 위치 및 세대 앞 주차장 진입 방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이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 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옥외공간의 식재 및 패턴디자인은 추후 시공시 구조적인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 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헬름,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헬름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시선 간섭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배치계획을 필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LPG저장소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LPG저장소 인접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정원은 배타적 사용권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함.
- 세대별 정원의 크기가 다르거나 “301,303동”은 세대정원이 미설치 되오니,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시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인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단, 세대에 접하는 개인정원은 제외)
- 단지내 어린이 집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정원의 면적의 크기와 형태, 위치, 레벨, 기울기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고 동일 주택형에서도 위치별로 면적의 크기 및 형태, 위치, 레벨, 기울기가 상이함. [세대정원의 크기는 주변여건(레벨, 조경석, 대지경계, 지장물, 배수로, 울타리, 헬스, 식재 등)에 의해 크기, 형태 및 높이가 각 세대별로 상이하고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시 세대정원은 입주 시 견본주택과 달리 왕마사로 조성되며, 입주 후 세대정원의 조성 및 변경 등의 관리주체는 입주자이며, 당사와 무관함.
- 입주 시 세대정원의 세대간 경계부 등에는 생울타리가 시공되며, 실 시공 시 폭, 높이,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세대간 경계부 생울타리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입주자이며, 당사와 무관함.
- 세대정원 내 경계석 및 우수배수 등을 위한 각종 설비(맨홀, 집수정, 트랜치, 배수로 등)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진입 및 보수작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업주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세대정원 면적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공간을 입주 이후 임의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 다락방에는 냉·난방 및 환기설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음.
- 다락의 크기, 천장형태 및 천장고 등은 각 타입에 따라 서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관계법령기준 등에 따라 세부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개별난방 방식(보일러 별도설치)이 적용되며, 지역여건상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세대 내 거실 및 침실 또는 발코니 천장에 기계환기설비가(전열교환기)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옥상 테라스에는 부동 수전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절기 미 퇴수 시 동파로 인한 피해는 입주자의 책임임
- 각 세대별 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비건립 세대의 경우 견본주택에 적용된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음.

- 세대(공용부 기능 포함)에 적용되는 IoT서비스 운영과 유지의 경우 시공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플랫폼 운영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된 조명기구의 형태와 기능(디자인 및 조도 등 상세스펙 포함)은 실제 시공과는 상이하며, 세부 시공사양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함.
- 지붕재는 유지보수에 유리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우수선홍통이 일부 세대는 옆세대와 공통 사용될 수도 있음
- 세대별 테라스 및 세대정원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수량, 종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식재 종류는 각 세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조경면적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개별 세대가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 식재된 수목 하자는 수목 유지관리활동 증빙자료 접수 시에만 하자보수 가능하며, 수목에 대한 유지관리활동은 입주자 부담하여야 함.
- 개별 세대정원은 생활타리 또는 철제 난간으로 경계지어져 있으며, 세대정원 외 조경면적(특히, 개별 세대정원과 접한 조경면적)은 공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으로 개별 세대가 전용할 수 없음.
- 각 동의 배치 및 향에 따라 일부 조경구간 식재의 생육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 됩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건축 기본마감(바닥, 벽, 천장)만 시공되며, (특히, 부대시설 중 공부방, 스터디카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등 모든 시설재에 대해서는 위탁사가 제공합니다.)
- 단지 외곽부위에 레벨 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층에 설치되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해상도 CCTV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으로 해당 시스템 구성에 따라 장비의 사양이 인허가 시 제출되었던 사양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내에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각 실의 천장고는 실시공사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도로로 인하여 소음, 매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는 보행자와 차량 진출입구로 계획되어 있으며, 동출입 시 안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출입구, 부출입구, 계단실 입구 등 인근에 위치한 세대는 소음, 매연, 시각적 간섭, 눈부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부 계단이 조성 될 경우, 인근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에 소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동별 배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도어의 손개임방지 의무화로 거실에 면한 도어에 시공되며, 본 공사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모형, 공급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대칭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의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 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거실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공사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 설치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분전반은 침실 또는 현관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벽체에 노출되며,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 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 및 강마루 등은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제품 독과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장롱, 불박이장류)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기타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별도로 구매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건조기 등)은 가구 등의 폭, 높이 차이, 전기용량 차이, 크기 등으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세대현관 및 대피공간 방화문은 본 공사시 방화성능 향상 등을 위하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줄눈 위치 및 각 약세서리 위치는 각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 후 체결바랍니다.
- 본 공사시 욕실 천장에는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를 설치될 예정이며,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화장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수구, 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실외기실, 세탁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환기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뒤틀림·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조, 샤워부스, 주방가구, 화장대 등 가구 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국내 생산되는 석고보드는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되며, 재생펄프로 사용되는 종이종 컬러 인쇄된 종이 섞여 들어가 희석되지 않은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료가 벽지에 베어나올 수 있으며 이는 시공 및 제품의 하자가 아닙니다.
- 세대 내 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계획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관련 없으며, 문 개폐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문짝모서리 상,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욕실 내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

- 세대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입면)에 환기 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싱크대 하부 및 욕실 거울 뒷면은 마감이 별도 시공되지 않습니다.
- 거실용도가 아닌 세대 발코니 및 공용시설, 부속시설에는 별도의 단열규정이 없어 온도차에 의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지관리 부분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일부 각 세대의 전자제품 또는 별도 시설설치 등에 의한 구조개선은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 특성상 세대 내 윗층 오배수관 및 우수관 사용에 따른 아래층 천정 또는 벽체에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설계

- 본 주택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성 개선을 위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형별면적(m²)x0.3025)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각 용도별 면적이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수점 이하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금액을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향, 층에 따라 일조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 등에 표시되는 주변단지 및 건물, 시설물,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등의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정된 내용을 임의 제작한 내용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상황과 다르거나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달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시 평면도, 배치도,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 이후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해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당 상품의 기타공용, 계약면적은 단지공용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의 계획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조경(수종, 식재개수 등) 세부 식재계획 및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화단에 설치되는 식재는 지피류 및 초화류 위주로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시공 시 단지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요청 또는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선형,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됩니다.)
- 단지 주변의 향후 신규 개발계획 및 도시시설물 설치, 도로 등의 신설 및 확장, 변경 등으로 인해 본 단지 준공 시 인접 세대의 향,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기존 건축물로 인하여 인접 세대의 향, 조망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출입구, 도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야간 조명 등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변현황및 현장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시설물(문주, 재활용집하장, DA, 단지 경계부 옹벽 등), 조경(포장 및 식재의 수종 및 수량, 단지 경계의 높이 차이, 각종 옹벽 및 자연석 쌓기 구간 등) 및 마감재는 본 시공 시 구조 등의 안전성, 현장여건 및 입주민의 이용효율 등을 고려하여 수량, 위치 및 크기, 디자인 등이 개선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와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시

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전기, 가스(101동 주변 LPG저장소) 공급 및 중수설비(304동 인근 지하시설물)를 위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그 시설의 작동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등에 의하여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규모 등은 기반시설 공급업체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포함)의 동선, 구성 및 실 배치 형태, 내부구조,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및 급배기 DA에 의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실제 시공 시 그 위치, 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클린 하우스가 지상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량 운행 및 세부계획(위치,형태)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세대의 안방 및 거실에 난간이 적용되어,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는 수정될 수 있으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여야 합니다.
- 건물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및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평형별 공급면적 등이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에 따른 대지 경계선 조정, 관련법규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등에 따라 단지 조경 선형 및 세부 식재 계획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및 경비실과 외부 계단, 조경시설물로 인해 일부세대는 시야에 간섭이 있을 수 있어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문주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옹벽설치로 인해 디자인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조경용 수목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보안등, 옥탑 및 조경용 조명 불빛으로 인하여 불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단지 차량출입구, 놀이터, 휴게시설, 주민공동시설, 각 동 필요 위치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옥외 주민공동시설 등에 의해 인접 세대에 생활소음 피해, 실내투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주민운동시설, 쓰레기수거함, 자전거보관소, 환기탑, 천창 등의 위치, 크기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수설비 가동 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및 외부의 시설물, 자재 및 형태(입면, 색채, 재질, 조경)등은 인허가 관청의 명령, 자재의 품질, 갑작스런 관련 법규 변경 등에 의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및 주차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각종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및 평면도 등[단위세대 실내마감(위생기구, 창호, 등기구 및 각종가구의 종류, 위치 등 포함), 외부색채계획, 단지주변 건물 및 도로, 조경시설물, 단지 진입로 등 포함]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고려사항으로 사전 고지된 내용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전에 본 사업지를 반드시 방문하여 도로소음, 지장물 등 각종 환경저해 요인 및 주변 여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요인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속동 옥상 및 옥외 주차장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되며, 미관,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부속동 옥상이나 옥외주차장 일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될 수 있으며 주동 외벽에 조형물 및 단지로고 사인물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옥외시설물 등은 공사중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명, 각종 사인물 등으로 인한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면 마감재 종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경우 벽돌타일 마감으로 인해 외부 창호가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미술장식품 위치 및 형태는 현재 미정인 상태며 추후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를 득하여 확정, 설치될 예정입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공동주택 외벽의 줄눈 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하되, 일부 실 배치나 각종 가구, 기구 및 마감재 등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자료나 모형상의 부대복리시설의 각종 창호, 가구, 기구, 마감재 및 색상 등은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부대 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향후 부대복리시설의 환기시설, 실외기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미관, 소음 및 냄새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대피시설은 완강기로 설치될 예정이므로, 건본주택과 분양홍보물을 필히 확인하여 각 세대 타입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우편물 수취함 위치 등은 인테리어 계획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은 601동 지상2층~4층 (공부방,스터디카페,골프연습장,피트니스), 701동 지상1층(무인택배보관소, 관리사무소) 지상2층(주민회의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인접 세대들은 소음 및 간섭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홍보물 및 모형을 통해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대시설 중 공부방,스터디카페,골프연습장,피트니스 등 위탁사가 제공합니다.)
- 102동, 103동, 301동, 502동 인근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이 설치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 시 이전 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형태 및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단지는 「 전기통신사업법 」 제69조의2 및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되었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용 안테나 및 중계시설은 기간사업자 공사분으로 장비 설치위치 및 설치수량은 기간사업자의 통신환경 및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시공사측에 요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중계장치 설치예정위치 : 701동 지상 1층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카탈로그 등) 및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중 공부방,스터디카페,골프연습장,피트니스 등 시행위탁사가 제공합니다.)

■ 계약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인허가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건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수정 공고 포함)의 내용은 본 계약에 편입되어 본 계약상 규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매수자는 본 건축물이 매도인 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시공사인 (주)유탕건설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트러스트 간에 2021년 08월 25일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여 진행되는 분양형(혼합형) 토지신탁사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본 특약사항의 내용이 분양 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인정합니다.

- 본 사업은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트러스트)와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체결한 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매도인으로서의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분양 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주식회사 트러스트)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원리금의 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매수인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모든 하자보수의 책임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유탕건설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브랜드·명칭 변경 포함) 교체시 매수인은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겸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 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 등 시공사의 의무는 시공사 (주)유탕건설에게, 분양계약 해제(해지)시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주식회사 트러스트에게 있다.
-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반드시 분양 계약서에서 명시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동 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시행사로서 사업주체(건축주) 및 분양권자로서의 의무나 책임은 주식회사 트러스트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의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건축주)로서의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분양광고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의무와 책임은 주식회사 트러스트가 부담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 및 손실의 배상을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 위탁자 주식회사 트러스트 및/또는 분양대행사(소속 임직원 포함)는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또는 매수자(수분양자)와 합의하여 본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본 분양계약의 내용·효력을 변경하거나 상실시키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연체료·위약금 채무 등을 감면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는 행위, 매수자(수분양자)에게 본 분양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본 분양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약속·확약하는 행위 등 일체를 할 수 없으며, 본 분양계약상 수탁자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수탁자를 대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한하여 수탁자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매수자(수분양자)가 본 분양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지체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이행최고 또는 위반사항 시정촉구 통지
 2. 매수자(수분양자)에 대한 본 분양목적물의 입주지정일(또는 입주지정기간) 통지

■ 본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92021-101-0012700	주택도시보증공사	63,028,0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칩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본 주택의 하자보수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은 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IX 기타

■ 사업관계자 현황

구 분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시행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120-81-67944
시행위탁자	(주)트러스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공로 154-7, 2층	466-86-00882
시공사	(주)유탑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2, 2층 201호	409-81-14831
설계사	(주)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63, 2층	608-81-94747
건축감리	(주)플랜에이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 786,372,000원(VAT 포함))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테라타워2 A동 1505호	120-87-00552
전기, 통신, 소방 감리	(주)윤엔지니어링 (감리금액 : 51,000,000원(VAT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동길 29(오라이동)	616-81-70862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개인 및 법인 또는 단체 등)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부동산취득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등 취득신고를 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마치고,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음.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1조의 제3항 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 용 여 부	설 치 내 용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호는 기밀성능 1등급 제품 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 콘센트 설치 및 전체대비 30% 이상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조명기구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사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 에 따른 절수형 설비 적용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의 2 및 「 공동주택관리법 」 제36조 제3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 됨.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아 이 비 스 1 2 7

1순위: 2021.12.09.(목)

2순위: 2021.12.10.(금)

당첨자발표일: 2021.12.20.(목)

총 127세대

| 주택타입 / A type, B type, C type, D type

분양문의 1533-0707

■ 견본주택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2487번지

■ 홈페이지: <http://www.jejuivies127.co.kr/>